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고 제2026-1249호

2026년 제4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청원경찰(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근무예정기간	담당업무
청원경찰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26. 12. 1. ~ '27. 9. 30. (약10개월)	• 광주센터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광주센터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 광주센터 내 질서유지 • 경비구역 순찰, 테러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 광주센터 경비·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 등

※ 근무예정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로143번길 34)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2. 1. ~ 2027. 9. 30.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채용분야	내 용	
청원경찰	근무형태/시간	■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30 (휴게 1시간) ■ 교대 근무 : 주-야-비-휴 - 주간 근무시간 : 07:30 ~ 18:30 (휴게 1시간) - 야간 근무시간 : 18:30 ~ (익일)07:30 (휴게 3시간) ※ 근무형태(주 5일 근무 또는 교대 근무)는 광주센터가 운영하는 근무계획에 따른다.

○ 보수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2조,「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근무여건에 따라 추가근로(연장근로 등)를 할 수 있으며 보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한하여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군경력, 유사경력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응시 자격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

○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4. 우대 및 가점사항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우대사항

○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재직)증명서(제9호 서식) 제출 시 인정
-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A기관 4개월, B기관 7개월 경력 제출 시 A기관 4개월 경력 불인정

※ 제9호 서식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발급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제출

※ 해당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인정
- 경비지도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복수 인정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각각 동일 종류의 자격증 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태권도 단증만 인정(품증은 단증으로 전환하여 제출)

※ <별첨2>의 단체에 한함

나. 가점사항 *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한정하여 적용

1) 사회형평가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를 가산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 항목별 중복 가점은 불가

※ 가점은 응시접수 당시 응시자가 제출한 개별 증명서로 확인(증명서 미제출 시 불인정)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청원경찰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각 평가요소를 점수화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선발대상의 마지막 순위가 다수일 경우 해당순위 모두 선발

<평가기준>
-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정량평가: 경력사항, 자격사항, 무도단증 등

나. 체력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원본 또는 사본)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력인증 기관(지역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인증서

- **인증일자가 공고일('26.9.30.) 이후**인 경우만 인정
- **예약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개시일(매월1,16일 오후1시)에 유의**

○ 합격기준 : **‘국민체력100’ 인증등급 2등급 이상**

구분	인증기준
1등급	건강체력이 모두 7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2등급	건강체력이 모두 50백분위 이상, 운동체력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신체조성 제외)

○ 제출기한 : **’26. 10. 22.(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측정 항목 : 체격 및 체력 15개 항목

구분	요인		측정항목
체격	신장		신장(cm)
	체중		체중(kg)
	체지방률		체지방률(%)
	허리둘레		허리둘레(cm)
	BMI		신체질량지수(kg,㎡)
체력	건강관련 체력	근력	상대악력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심폐지구력	20m 왕복오래달리기
			스텝검사
			트레드밀 검사
		유연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민첩성		10m 왕복달리기
			반응시간 검사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체공시간 검사

다. 면접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방법 : 개별면접(지원자별 20분 내외 질의 응답 형식)

○ 평정기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각 평정 요소마다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 **순위결정방법**

1.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2.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3. 동점자 우선순위:
 ① 서류전형 총 점수가 높은 사람
 ②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점수가 높은 사람
 ③ 경력 점수가 높은 사람
 ④ 자격증 점수가 높은 사람
 ⑤ 무도단증 점수가 높은 사람

※ 사회형평가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상(20점), 중(10점), 하(5점)으로 가정하여 만점(100점)의 3%를 가산한 점수로 평가

6.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9. 30.(수) ~ 10. 8.(목)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7일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 16.(금)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체력시험	10. 22.(목)	마감일 내 체력인증서 제출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10. 23.(금)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10. 29.(목)	
최종합격자 발표	~ 11. 30.(월)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 통보
임용	12. 1.(화) 예정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9. 30.(월) ~ 10. 8.(목) / 9일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62071) 광주광역시 서구 송암로143번길 3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 청원경찰 채용담당자 (☎ 062-604-0213)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방문 접수 등 불가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중복, 분할접수 불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26. 10. 13.(화) 17:00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담당자에 확인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제1호 서식) 1부

○ 응시원서(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제3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제6호 서식)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제7호 서식) 1부

○ 부정합격자 임용 취소 안내 및 동의서(제8호 서식)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9호 서식)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제10호 서식) 경력별 1부

※ 경력(재직)증명서(제10호 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급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 가능

○ 가점사항 해당시 개별 증명서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 **채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만 인정**
-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 관련 공무원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관련직무(특수경비, 청원경찰)가 명시된 경우 또는 방호 관련 공무원 경력에 한함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하고,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경력 인정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예정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직위(직급), 담당업무 내용 및 상근여부, 근무형태 등*을 정확히 기재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근 및 시간제(근무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발급기관명(직인 포함),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발급자 성명(서명 포함)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제9호 서식 참조)
- 기관(기업) 폐업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홈택스 발급)'과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업무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자격증 각 1부(사본) : 경비지도사(일반 또는 경비), 응급구조사(1급 또는 2급)

○ 무도단증 각 1부(사본)

※ 위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9. 기타(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홈페이지에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합격 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반환신청한 자의 서류는 반환(최종 채용합격자는 제외)하며, 반환신청하지 않는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 청원경찰 채용 담당(☎ 062-604-0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의 팩스(062-604-0299)로 제출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62-604-0213)
4. 우리 기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 관련 제출 서류를 보관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별첨 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

주요업무	○ 광주센터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광주센터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광주센터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 광주센터 경비구역의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 광주센터 경비구역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 ○ 광주센터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 ○ 광주센터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 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업무 이해도)** 청원경찰의 역할, 직무지식(청원경찰법, 경비업법 등), 방호의 개념, 상황 대응 요령 및 상황보고 체계 ○ **(직무분야 역량)** -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입 통제,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민원 대응 능력 등 문제 해결 능력 및 신체적 능력

필요지식	○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청사 방호 및 경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우대요건	○ 직무 관련 경력이 있는 자: 경찰공무원, 방호 관련 공무원, 청원경찰, 방호·경비·감시원 등 ○ 경비지도사(일반, 기계)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별첨 2】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 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 까지 취득한자격증만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무예진흥원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별첨 3】 ※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에만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